

# 『기술혁신전문펀드(6호)』 위탁운용사 선정계획 공고

기술혁신전문펀드는 「산업기술 자금관리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 예산을 예치하는 R&D 전담은행(중소기업은행, (주)신한은행, (주)하나은행)의 출자금을 기반으로 조성하여 산업기술 자금 관리기관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이 기획 및 관리하고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주)가 운용하는 정책형 민간펀드입니다.

2025년도 「기술혁신전문펀드(6호)」의 위탁운용사 선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1. 선정 개요

### 1-1. 블라인드펀드(모펀드 제안방식)

항 목	세부내용				
출자계획	○ 총 1,600억원 이내				
	(단위: 억원)				
	지원 분야	선정 운용사 수	출자 금액	출자 비율	최소 결성금액
	첨단제조AI/ 반도체·핵심소재	2개	500 (각 250)	45%	1,100 (각 550)
	무탄소에너지/모빌리티	2개	500 (각 250)	50%	1,000 (각 500)
	바이오	1개	250	50%	500
	유통산업혁신	1개	100	50%	200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1개	250	50%	500
접수일시 및 심사결과 발 표	구분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그 외 분야	
	접수	'25.10.24.(금) 16:00 까지		'25.08.22.(금) 16:00 까지	
	발표	'25.11월 중		'25.9월 중	
	※ 심사결과 발표는 접수결과 등에 따라 변동 가능				
펀 드 결성시한	○ 선정일로부터 5개월(글로벌오픈이노베이션 분야의 경우 7개월)*				
	* 부득이한 경우 한국성장금융과 협의하에 연장 가능				

## 1-2. 프로젝트펀드(운용사 제안방식)

항 목	세부내용
출자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 200억원에 대하여 운용사 자율제안*</li> <li>* 재원 소진 시까지 수시접수 및 선정</li> </ul>
모펀드 출자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약정총액의 50%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개별 협의</li> </ul>
펀 드 결성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정일로부터 4개월*</li> <li>* 부득이한 경우 한국성장금융과 협의하에 연장 가능</li> </ul>

## 1-3. 공통사항

항 목	세부내용
출자대상 투자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의한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li> <li>○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의한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li> <li>○ 「벤처투자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벤처투자조합</li> <li>○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li> <li>○ 상기와 유사한 목적의 외국집합투자기구(이하 “역외펀드”)</li> <li>- 공고일 시점의 현행 법규에 따른 적법·유효한 투자기구일 것을 요하되, 펀드 결성 시 별도 협의</li> <li>※ 본 계획에 따라 선정된 위탁운용사가 관련 법규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투자기구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 투자기구에 대한 운용 자격을 갖추고 있고, 본 건 펀드의 운용에 불리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결성 전까지 투자기구에 대한 변경 가능</li> </ul>
운 용 사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서 접수일 현재 ‘출자대상 투자기구’의 관련법규에 따른 펀드의 결성과 업무집행이 가능한 국내 설립 법인</li> <li>○ 공동 운용(CO-GP)시에는 제안펀드 운용상 법률적 문제가 없는 경우에 한함</li> <li>○ 역외펀드 운용사의 경우 모펀드의 역외펀드 가입 전까지 자본시장법 제279조 제1항에 따른 금융위원회 등록절차를 완료하여야 함</li> <li>○ 제안운용사에 운용 중인 기존 펀드 정관(규약)에 유사한 목적을 가지거나 경합 소지가 있는 펀드 설립을 금지하는 경우 사전 협의 요망</li> <li>○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분야의 경우 추가적으로 아래의 신청자격 충족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50억원 이상을 해외LP로부터 사전에 출자의향(LOI) 또는 출자확약(LOC)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접수(결성 시 150억원 이상의 해외LP 출자약정 필수)</li> <li>-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해외 사무소 또는 지사 등을 보유한 국내 운용사</li> <li>② 국내-해외 운용사 공동운용(CO-GP)</li> <li>③ 해외 운용사. 단, 해외 운용사는 접수일자 기준, 국내에 상주 인력이 있는 사무소 또는 지사 설치가 완료되어야 함</li> <li>④ 과거 해외LP를 유치한 펀드를 통해 국내외 투자 경험 보유한 국내 운용사</li> </ol> </li> </ul> </li> </ul>

항 목	세부내용
운 용 사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홈페이지* 공개모집 공고 등을 통해 한국성장금융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용사, 운용인력, 펀드운용계획 등을 종합평가하여 선정</li> </ul> </li> </ul> <p>* 한국성장금융: www.kgrowth.or.kr (출자사업 공고)</p>

## 2. 투자대상

### 2-1. 블라인드펀드(모펀드 제안방식)

○ 국내 중소·중견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 제외), 국외창업기업\*\* 및 해외기업\*\*\*을 대상으로 투자기간 내 아래의 주목적 투자대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펀드의 투자를 통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에서 분리되는 중소·중견기업은 투자대상에 포함 가능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정의) 3호의2에 따른 국외창업기업

\*\*\* 해외기업은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분야에 한함

분야	세부 내용						
첨단제조AI/ 반도체· 핵심소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래 ①~③를 모두 충족하여야 함<sup>주1)</sup></li> <li>① 첨단제조 및 AI 분야<sup>주2)</sup>, 반도체 및 핵심소재 분야<sup>주3)</sup> 기업의 R&amp;D활동<sup>주4)</sup>에 아래 의무투자 금액* 이상을 투자</li> </ul> <p>* 의무투자 금액</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분야</th> <th>의무투자 금액</th> </tr> </thead> <tbody> <tr> <td>첨단제조 및 AI</td> <td>최소결성금액의 30%</td> </tr> <tr> <td>반도체 및 핵심소재</td> <td>최소결성금액의 30%</td> </tr> </tbody> </table>	분야	의무투자 금액	첨단제조 및 AI	최소결성금액의 30%	반도체 및 핵심소재	최소결성금액의 30%
	분야	의무투자 금액					
첨단제조 및 AI	최소결성금액의 30%						
반도체 및 핵심소재	최소결성금액의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② 투자일로부터 5년 이내 산업부 R&amp;D과제 수행 경험 보유 기업에 최소결성금액의 20% 이상 투자</li> <li>③ 우수 기술기업<sup>주5)</sup>에 투자집행금액의 80% 이상 투자</li> </ul> <p>주1) 단일 투자 건의 주목적 투자대상 중복적용 가능  주2) 첨단제조 및 AI 분야 해당여부는 혁신성장 공동기준 준용(별첨1), 이외 주목적 투자대상 해당여부는 한국성장금융과 사전협의  주3) 반도체 및 핵심소재 분야 해당여부는 혁신성장 공동기준 준용(별첨2), 이외 주목적 투자대상 해당여부는 한국성장금융과 사전협의  주4) R&amp;D활동 해당 여부는 별첨8 참고  주5)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받은 투자용 TCB 기술등급이 상위5등급(TI5) 이상이거나,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가치평가 또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평가를 받은 기업</p>						

분야	세부 내용
----	-------

**무탄소  
에너지/  
모빌리티**

- 아래 ①~③를 모두 충족하여야 함<sup>주1)</sup>
- ① 무탄소에너지 및 에너지AI전환 분야<sup>주2)</sup>, 모빌리티 분야<sup>주3)</sup> 기업의 R&D활동<sup>주4)</sup>에  
아래 의무투자 비율\* 이상 투자

\* 의무투자 비율

분야	의무투자 비율
무탄소에너지 및 에너지AI전환	최소결성금액의 30%
모빌리티	최소결성금액의 30%

- ② 투자일로부터 5년 이내 산업부 R&D과제 수행 경험 보유 기업에 최소결성금액의  
20% 이상 투자
- ③ 우수 기술기업<sup>주5)</sup>에 투자집행금액의 80% 이상 투자

주1) 단일 투자 건의 주목적 투자대상 중복적용 가능

주2) 무탄소에너지 및 에너지AI전환 분야 해당여부는 혁신성장 공동기준 준용(별첨3),  
이외 주목적 투자대상 해당여부는 한국성장금융과 사전협의

주3) 모빌리티 분야 해당여부는 혁신성장 공동기준 준용(별첨4), 이외 주목적 투자대상  
해당여부는 한국성장금융과 사전협의

주4) R&D활동 해당 여부는 별첨8 참고

주5)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받은 투자용 TCB 기술등급이 상위5등급(TI5) 이상이거나,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가치평가 또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평가 또는 「산업부 에너지 혁신벤처 육성방안」에 따른 기후가치평가를 받은 기업

**바이오**

- 아래 ①~③를 모두 충족하여야 함<sup>주1)</sup>
- ① 바이오 분야<sup>주2)</sup>의 기업의 R&D활동<sup>주3)</sup>에 최소결성금액의 60% 이상 투자
- ② 투자일로부터 5년 이내 산업부 R&D과제 수행 경험 보유 기업에 최소결성금액의  
20% 이상 투자
- ③ 우수 기술기업<sup>주4)</sup>에 투자집행금액의 80% 이상 투자

주1) 단일 투자 건의 주목적 투자대상 중복적용 가능

주2) 바이오 분야 해당여부는 혁신성장 공동기준 준용(별첨5), 이외 주목적 투자대상  
해당여부는 한국성장금융과 사전협의

주3) R&D활동 해당 여부는 별첨8 참고

주4)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받은 투자용 TCB 기술등급이 상위5등급(TI5) 이상이거나,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가치평가 또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평가를 받은 기업

분야	세부 내용
<p style="text-align: center;"><b>유통 산업 혁신</b></p>	<p>○ 아래 ①~③를 모두 충족하여야 함<sup>주1)</sup></p> <p>① 유통산업 혁신 분야 기업<sup>주2)</sup>의 R&amp;D활동<sup>주3)</sup>에 최소결성금액의 60% 이상 투자</p> <p>② 투자일로부터 5년 이내 산업부 R&amp;D과제 수행 경험 보유 기업에 최소결성금액의 20% 이상 투자</p> <p>③ 우수 기술기업<sup>주4)</sup>에 투자집행금액의 80% 이상 투자</p> <p>주1) 단일 투자 건의 주목적 투자대상 중복적용 가능</p> <p>주2) 시솔루션을 활용하는 유통·물류 기업 또는 유통·물류 기업에 시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 등으로 시솔루션 해당 여부는 혁신성장공동기준(별첨6)을 준용하며 이외 주목적 투자대상 해당여부는 한국성장금융과 사전협의</p> <p>주3) R&amp;D활동 해당 여부는 별첨8 참고</p> <p>주4)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받은 투자용 TCB 기술등급이 상위5등급(TI5) 이상이거나,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가치평가 또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평가를 받은 기업</p>
<p style="text-align: center;"><b>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b></p>	<p>○ 아래 두 가지 분류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에 기술혁신전문펀드 출자금액 이상 투자</p> <p>- (국내기업) 해외 기업, 대학교 또는 연구기관과 오픈이노베이션<sup>주1)</sup>을 수행하는 기업, 또는 해외 진출<sup>주2)</sup>을 추진<sup>주3)</sup>하는 기업</p> <p>- (해외기업) 국내 기업, 대학교 또는 연구기관과 오픈이노베이션을 수행하는 기업, 또는 국내에 연구소를 설립한 기업</p> <p>주1) 기술 이전, 공동 R&amp;D, 기술 사업화 등 기술 협력 활동(별첨7)</p> <p>주2)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의 수출, 수출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해외지사 설립 등</p> <p>주3) 과거 5년 이내 해외진출 실적이 있거나 투자일 이후 2년 이내 해외진출 실적이 있을 시 인정</p>

## 2-2. 프로젝트펀드(운용사 제안방식)

○ 국내 중소·중견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 제외) 및 국외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투자기간 내 아래의 주목적 투자대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펀드의 투자를 통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에서 분리되는 중소·중견기업은 투자대상에 포함 가능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정의) 3호의2에 따른 국외창업기업

### 주목적 투자대상

○ 산업부 R&D과제 수행 경험 보유 기업에 투자<sup>주)</sup>

주) 신규 투자 방식으로 피투자기업에 자금이 유입되는 방식의 투자로서, 신주·구주가 혼합된 경우, 한국성장금융과 사전협의

## 3. 주요 출자조건

### 3-1. 블라인드펀드(모펀드 제안방식)

항 목	세부내용								
운 용 사 출자비율	○ 약정총액의 1% 이상* * 공동 운용의 경우 위탁운용사는 각각 약정총액의 의무출자비율 이상 출자, 운용사 계열사의 출자금액은 의무출자비율 산정에서 제외함 * 「상법」상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인 운용사의 경우 운용인력 출자 금액은 운용사 출자금액으로 인정(단,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 그에 따름)								
존속기간	○ 펀드 설립일(성립일, 설립등기일)로부터 8년 이내								
투자기간	○ 펀드 설립일(성립일, 설립등기일)로부터 4년 이내								
납입방식	○ 수시납(Capital call) 또는 분할납								
운용보수	○ <b>관리보수</b> : 펀드 최종 결성규모에 구간별 관리보수율을 적용하여 합산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500억원 이하</td> <td>1,000억원 이하</td> <td>1,500억원 이하</td> <td>1,500억원 초과</td> </tr> <tr> <td>2.2% 이내</td> <td>1.7% 이내</td> <td>1.2% 이내</td> <td>1.0% 이내</td> </tr> </table> * 성립일~2년: 약정총액 기준 / 2년 이후~존속기한: 투자잔액 기준 ** 다른 방식의 관리보수 제안시 상기표를 통해 산출된 관리보수 범위 내에서 협의 가능 ○ <b>성과보수*</b> : 기준수익률(IRR 6%) 초과수익의 20% 이내 ※ 펀드별 보수 체계는 선정 시 상기 범위 내에서 개별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 ○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분야 운용보수는 운용사 자율제안 후 협의하여 최종 결정	500억원 이하	1,000억원 이하	1,500억원 이하	1,500억원 초과	2.2% 이내	1.7% 이내	1.2% 이내	1.0% 이내
500억원 이하	1,000억원 이하	1,500억원 이하	1,500억원 초과						
2.2% 이내	1.7% 이내	1.2% 이내	1.0% 이내						

항 목	세부내용
핵심 운용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자경력 3년 이상 경력자 2인 이상이 참여하고, 전체 핵심운용인력의 투자경력 평균이 4년 이상일 것</li> <li>○ 공동 운용의 경우 운용사당 핵심운용인력 1인 이상이 참여하여야 함</li> <li>○ 핵심운용인력 중 1인은 투자기간 만료 또는 주목적 투자 완료 전에는 신규로 결성되는 다른 펀드의 핵심운용인력 겸임을 제한</li> <li>○ 핵심운용인력이 투자기간 중 본건 펀드를 포함하여 핵심운용인력으로 참여할 수 있는 펀드의 개수는 4개*를 초과할 수 없음</li> <li>* 투자기간 만료 또는 주목적 투자 완료 펀드는 미포함하며,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분야의 경우 해외 사모펀드의 특수성을 감안해 미적용함</li> <li>○ 핵심운용인력은 출자대상 투자기구의 근거법령에서 요구하는 펀드운용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li> <li>○ 펀드 결성 시 핵심운용인력은 규약(정관)에 기재</li> </ul>
동일기업 투자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펀드의 동일기업 투자한도는 펀드 약정총액의 20%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타 출자자와 협의하여 규약(정관)에 반영</li> <li>* 단, 첨단제조AI/반도체·핵심소재 분야의 경우 동일기업 투자한도 생략을 원칙으로 하되, 타 출자자와 협의하여 적용</li> </ul>
국외 창업기업 투자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펀드의 국외창업기업 투자한도는 펀드 약정총액의 20%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타 출자자와 협의하여 규약(정관)에 반영</li> <li>*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분야는 조성 취지를 감안하여 미적용함</li> </ul>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용사가 선정된 본 펀드와 공동으로 동일 기업에 투자 또는 자금 제공(이하 "공동투자")을 위해 공동투자자를 모집하거나, 새로운 펀드·법인 등을 설립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한국성장금융에게 공동투자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li> </ul>

### 3-2. 프로젝트펀드(운용사 제안방식)

항 목	세부내용
운용사 출자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약정총액의 1% 이상*</li> <li>* 공동 운용의 경우 위탁운용사는 각각 약정총액의 의무출자비율 이상 출자, 운용사 계열사의 출자금액은 의무출자비율 산정에서 제외함</li> <li>* 「상법」상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인 위탁운용사의 경우 운용인력 출자금액은 운용사 출자금액으로 인정 (단,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 그에 따름)</li> </ul>
핵심 운용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자경력 5년 이상 경력자 1인 이상이 참여할 것</li> <li>○ 공동 운용의 경우 운용사당 핵심운용인력 1인 이상이 참여하여야 함</li> <li>○ 핵심운용인력은 출자대상 투자기구의 근거법령에서 요구하는 펀드운용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li> <li>○ 펀드 결성 시 핵심운용인력은 규약(정관)에 기재</li> </ul>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존속기간, 투자기간, 운용보수 등은 펀드규모 및 특성을 고려하여 운용사가 개별제안</li> </ul>

### 3-3. 공통사항

항 목	세부내용
출자자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기 사항은 한국성장금융과 협의 하에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기관 및 정책성 펀드가 출자자로 참여하는 경우</li> <li>- 해외출자자(해외출자자의 국내법인 포함)가 참여하는 경우</li> <li>- 기관투자자 및 법인 외 개인출자자 등이 참여하는 경우</li> </ul> </li> </ul>
수탁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성장금융이 제시하는 금융기관 Pool에서 선정</li> <li>○ 펀드자산의 관리는 수탁회사와의 업무지시서를 통해서만 가능</li> </ul>
회 계 감 사 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성장금융이 제시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회계감사인 선정</li> </ul>
펀 드 전자보고 시 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펀드 전자보고시스템 사용 의무</li> <li>○ 펀드운용 등에 대하여 한국성장금융이 지정하는 전자문서 방식으로 보고</li> <li>○ 관련 시스템 구축 및 사용 비용은 운용사가 부담</li> </ul>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공고에 의해 운용사가 제안한 출자조건(출자금액, 보수 등)의 적용 여부는 선정 후 최종 결정 예정임</li> <li>○ 미합중국의 은행지주회사법(Bank Holding Company Act of 1956), 최종 시행규정(Volcker Rule Implementing Regulations) 등을 준수해야 함</li> <li>○ 본 공고문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사모투자 일반 관행에 따르며, 결성 과정에서 한국성장금융과 개별 협의하여 결정함</li> </ul>

## 4. 선정 배제, 취소 기준

### □ 선정 배제

- 법령 등의 준수와 관련하여 운용사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동 사유로 펀드의 적법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안시점 현재 법령 위반 또는 시정 명령 미이행(미해소), 업무정지 상태에 있는 경우
  - 제안서 작성 기준일로부터 과거 3년 이내에 법령위반 등으로 관계 감독 기관으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경우

- 제안서 작성 기준일로부터 과거 3년 이내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재를 합산하여 3회 이상 받은 경우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주의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제외한 펀드운용 관련 법령 위반 등으로 관계당국으로부터 받은 경고·시정명령·업무정지

※ 다만, 법령위반 등 제재내역이 본 펀드 운용부서, 운용사의 임직원 등과 관련성이 적은 경우는 선정 배제 사유에서 제외 가능

- 회사 및 펀드 운영상 도덕적 해이 또는 제3자 경유 등을 통해 사실상 법령을 위반한 상태라고 판단되는 경우
- 자산건전성이 취약하거나, 제안서 작성 기준일로부터 2년 이내 도덕적 해이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위탁운용사로서 펀드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투자업체 발굴 및 투사 의사결정 등 펀드 운용과정에서 대주주 등 외부의 압력으로 위탁운용사로서 독립적 의사결정 및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안 펀드의 핵심운용인력과 운용사 대표이사가 제안서 작성 기준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감독당국으로부터 감봉(직원인 경우) 또는 문책경고(임원인 경우) 이상의 제재를 받은 경우
- 위탁운용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형사상 소송의 진행, 리스크 관리, 컴플라이언스 등의 위험관리체계 부재, 경영권 불안정, 운용인력의 잦은 이동 등으로 펀드의 안정적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한국성장금융의 운용 펀드가 출자한 펀드의 정상적인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한 의무의 불이행 행위 등을 한 위탁운용사로서 펀드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고의적 누락 또는 중대한 오류 등으로 중요한 제안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기재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공고일 이후 위탁운용사 또는 제3자가 출자자의 선정 절차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 선정 취소

- 펀드의 최소결성금액(조정된 경우 조정 후 금액을 말함)에 미달하는 경우
- 한국성장금융이 결정한 출자조건을 위탁운용사가 수용하지 않아 규약(정관 등 펀드 관련 계약을 포함, 이하 동일) 협의 등 후속업무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 위탁운용사가 타 출자자의 출자확약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사실이 허위 또는 의도적인 조작으로 밝혀지는 경우
- 위탁운용사가 법령 위반 또는 시정명령 미이행 상태이거나 기타 우회적인 방법 등으로 사실상 법령위반 상태에 있어 펀드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위탁운용사 선정 후 결성총회까지 선정 배제 사유 또는 당해 펀드의 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선정 취소 발생 시, 차순위 후보자로 위탁운용사 선정 가능

## 5. 제재 사항 및 기타

### □ 제재 사항

- 결성시한(협약에 의한 연장기한 포함) 내 펀드결성을 완료하지 못한 위탁운용사 또는 선정이 취소된 위탁운용사에 대해서는 각각 결성시한 또는 선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 이하 출자를 제한할 수 있음
  - 다만, 관련 법규상 제한 등의 사유로 인해 펀드결성이 지연될 경우 제재부과 대상에서 제외 가능
- 선정된 펀드가 존속기간 중 규약(정관) 상 투자 의무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해당 위탁운용사에 대해 투자기간 종료일 또는 펀드 해산일로부터 1년 이하 출자를 제한하며, 기지급된 관리보수를 환수하거나 성과보수를 미지급할 수 있음
- 선정된 운용사가 출자확약서 등의 제출에 따라 우대를 받았으나, 그 사실이 허위 또는 의도적인 조작으로 밝혀지는 경우 3년 이하 출자를 제한하고, 실제 출자금액이 당초 제출한 출자확약서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1년 이하 출자를 제한할 수 있음
- 출자대상 투자기구 결성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까지 최초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출자대상 투자기구를 해산할 수 있음

- 제안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중대한 오류 등의 허위사실 기재 시 위탁운용사 선정 절차에서 배제하며, 선정 이후에도 선정을 취소하고 제재 통보일로부터 3년 이하 출자를 제한할 수 있음
  - 특히, 운용사 및 운용인력의 투자실적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허위, 조작하여 제출하거나 누락한 것이 밝혀지는 경우 위탁운용사 선정 절차에서 배제하며, 선정 이후에도 선정을 취소하고 제재 통보일로부터 3년 이하 출자를 제한함
- 선정된 운용사가 펀드 운용 과정에서 관련 법령 및 규약 등을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고의적·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에는 제재 통보일로부터 3년 이하 출자를 제한할 수 있음

□ 기타 \* 모펀드 제안방식에 한함

- 접수일시 내 접수처 도착분에 한해 접수하며, 접수 후 한국성장금융이 요청하지 않은 제안사항 변경 및 추가자료 제출 등은 허용하지 않음
- 제안서 작성기준일은 **2025.6.30.(월)**로 하며, 핵심운용인력 등의 참여 인력은 접수일 현재 기준으로 함

6. 선정절차 및 일정 \* 모펀드 제안방식에 한함

□ 선정 절차

○ 공고 → 제안서 접수 → 서류심사 → 현장실사 → 제안심사 → 최종선정

□ 선정 일정\*

일자		내용	비고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그 외 분야		
'25. 10. 24.(금)	'25. 8. 22.(금)	제안서 접수	접수시간 : 10:00~16:00
'25. 11월중	'25. 9월중	최종 선정	개별 통지
'26. 6월중	'26. 2월중	선정일로부터 5개월 내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분야는 7개월 내)	-

※ 세부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7. 지원방법 및 출자 설명회

### □ 지원방법 \* 모펀드 제안방식에 한함

- 한국성장금융이 정하는 제출서류\* 및 그 내용을 포함한 USB메모리 1개를 지정된 접수처에 접수당일 지정된 접수시간 내 제출
  - \* 제출서류 및 관련양식은 공고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관련 양식은 별도 공지 예정)
- 제안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운용사는 별도 PT자료(8부)를 제출
  - 분량 : 20페이지 이내 (발표 당일 PT자료, 파일 별도 지참)

### □ 출자 설명회

- 일시 : 2025년 8월 1일(금) 14:00
- 장소 : 한국성장금융 대강당(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31, SK증권빌딩 11층)
  - \* 단, 출자 설명회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가능하며, 변경 시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 예정
  - \*\* 출자 설명회에 참석을 원하는 운용사는 2025년 7월 29일(화)까지 하기(8. 접수처 및 문의방법 참고) 메일주소로 참석인원 관련 정보(참석 인원수, 성함, 직급 등)를 송부하여야 하며, 운용사별 참석인원은 4명을 초과할 수 없음

## 8. 접수처 및 문의 방법

□ 접수처 :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31, SK증권빌딩 11층)

□ 문의방법 : 한국성장금융 산업금융2팀

연락처	E-mail
02-2090-9141	answerkim@kgrowth.or.kr
02-2090-9124	hekim@kgrowth.or.kr

2025년 7월 25일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주)

# 별첨1

## 첨단제조 AI 분야 해당 품목

혁신성장 공동기준 품목 중 첨단제조 AI 분야에 해당하는 품목을 선별, 기준 제시

첨단제조 AI			
테마명	분야명	혁신성장 공동기준 품목명	
A	제조·모빌리티	A01001	3D머신비전
		A01002	3D·4D프린팅
		A01003	자율제조·스마트팩토리 솔루션
		A01004	미세가공기술
		A01005	이종소재접합기술
		A01006	지능형기계
		A01007	첨단소재가공시스템
		A01008	개인맞춤형 제품생산시스템
		A01009	비파괴 검사
		A01010	하이브리드 제조
		A01011	고부가 표면처리기술
		A01012	스마트 패키징
	로봇	A02001	제조로봇
		A02002	서비스로봇
H	AI 인프라 및 핵심모델	H27001	기계학습·딥러닝
		H27002	지능형 상황진단 및 분석
		H27003	멀티모달 모델
		H27004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술(HMI)
		H27005	AI칩
		H27006	온디바이스 AI 기술
	데이터 분석·컴퓨팅	H28001	에지컴퓨팅
		H28002	메모리중심 컴퓨팅
		H28003	클라우드 컴퓨팅
		H28004	빅데이터
		H28005	데이터시각화
		H28006	시맨틱기술
		H28007	차세대 데이터저장
		H28008	슈퍼컴퓨팅
		H28009	양자컴퓨팅
	AI 융합서비스	H29001	AI 진단
		H29002	지능형교통체계
		H29003	지능형 사회간접자본 유지관리
		H29004	AI 분석 및 예측 솔루션
		H29005	AI 휴머노이드
		H29006	AI 기반 콘텐츠 개발
H29007		AI 고객경험(CX)	

\* 6차 개편 혁신성장 공동기준 매뉴얼(혁신성장정책금융센터, '25.4월) 참조하여 재구성함

## 별첨2

## 반도체·핵심소재 분야 해당 품목

혁신성장 공동기준 품목 중 반도체·핵심소재 분야에 해당하는 항목을 선별, 기준 제시

반도체				
테마명		분야명	혁신성장 공동기준 품목명	
G	반도체·디스플레이	반도체	G25001	3D집적회로
			G25002	전력반도체소자
			G25003	시스템반도체
			G25004	차세대 메모리
			G25005	반도체 장비
			G25006	칩렛
			G25007	반도체 소재
H	인공지능	AI 인프라 및 핵심모델	H27005	AI칩
핵심소재				
테마명		분야명	혁신성장 공동기준 품목명	
A	제조·모빌리티	제조공정	A01005	이종소재접합기술
			A01007	첨단소재가공시스템
			A01011	고부가표면처리기술
B	소재·부품	미래유망소재	B06001	기능성 탄소소재
			B06002	전도성 잉크
			B06003	압전·열전소자
			B06004	초전도체
			B06005	미세캡슐
			B06006	바이오 화학소재
			B06007	나노소재·부품
			B06008	슈퍼섬유
			B06009	스마트섬유
			B06010	이온성 액체(이온 전도체)
			B06011	복합재료
			B06012	경량화 소재
			B06013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B06014	고기능성 촉매
			B06015	자극반응성 소재
			B06016	기능성 특수유리
			B06017	기능성 분리막
			B06018	고분자 첨가제
			B06019	초고강도 고기능 금속
			B06020	친환경섬유
D	환경·스마트 농축수산	자원순환	D15005	유니소재화 제품
		그린바이오	D17005	식품소재/첨가물
G	반도체·디스플레이	반도체	G25007	반도체 소재
		디스플레이	G26001	디스플레이 소재
E	바이오헬스	정밀의료(치료·진단)	E19020	의료용 생체적용 소재

\* 6차 개편 혁신성장 공동기준 매뉴얼(혁신성장정책금융센터, '25.4월) 참조하여 재구성함

### 별첨3

## 무탄소에너지 및 에너지시전환 분야 해당 품목

혁신성장 공동기준 품목 중 무탄소에너지 및 에너지시전환 분야에 해당하는 항목을 선별, 기준 제시

무탄소에너지 및 에너지시전환				
테마명	분야명	혁신성장 공동기준 품목명		
B	소재·부품	핵심부품·센서	B07003	스마트조명
			C08001	태양광발전
C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C08002	바이오매스 에너지
			C08003	재생열에너지
			C08004	해양에너지
			C08005	풍력발전
			C08006	신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시스템
			C09001	원자력발전
		원자력·핵융합	C09002	차세대원자로-SMR
			C09003	원전플랜트 해체
			C09004	방사성폐기물 처리
			C09005	원전연계 공정열원생산
			C09006	핵융합에너지
			에너지저장	C10001
		C10002		슈퍼커패시터
		에너지효율향상	C11001	초임계CO2 발전시스템
			C11002	가스터빈 발전
			C11003	에너지 가스변환
			C11004	무탄소 가스발전
			C11005	액화기술
			C11006	폐열회수
			C11007	에너지 하베스팅
			C11008	고온원처리 시스템
			C11009	스마트그리드
			C11010	분산에너지 시스템
			C11011	지능형 공조시스템
			C11012	동적송전용량 측정기술
			C11013	스마트 직류배전
			C11014	초고압직류 송배전
			C11015	가정용에너지 관리
			C11016	제로에너지빌딩
			C11017	히트펌프
		이차전지	C12001	리튬이온배터리
			C12002	차세대 이차전지
			C12003	배터리에너지 관리체계
C12004	무선충전			
C12005	이차전지 재사용·재자원화			
수소·연료전지	C13001	수소에너지		
	C13002	연료전지 발전		
	C13003	원전연계 수소생산		
D	환경개선	D14005	친환경 냉매	
		D14006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D14010	친환경 연료	
	자원순환	D15001	금속자원 재자원화	
		D15003	모듈러건축	
		D15004	신재생발전시스템 재자원화	
		D15007	전자폐기물 업사이클링	
		D15008	폐자원에너지	
	스마트 농축수산	D16002	스마트 농업	
D16003		스마트 어업		
F	ICT·디지털	디지털 전환	F23001	스마트물류시스템
			F23003	스마트홈
			F23005	디지털트윈
			F23009	스마트시티

\* 6차 개편 혁신성장 공동기준 매뉴얼(혁신성장정책금융센터, '25.4월) 참조하여 재구성함

## 별첨4

## 모빌리티 분야 해당 품목

혁신성장 공동기준 품목 중 모빌리티 분야에 해당하는 품목을 선별, 기준 제시

모빌리티				
테마명	분야명	혁신성장 공동기준 품목명		
A	제조·모빌리티	항공·우주/방산	A03001	드론(무인기)
			A03002	항공기
			A03006	AAM/UAM(항공 모빌리티)
	제조·모빌리티	모빌리티	A04001	첨단 철도시스템
			A04002	전기·하이브리드차
			A04003	자율주행차
			A04004	전기·수소차 충전 인프라/서비스
			A04005	퍼스널모빌리티 인프라/서비스
			A04006	수소전기차
			A04007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
	제조·모빌리티	조선·해양	A05002	고효율 친환경 선박
			A05003	자율운항선박
	B	소재·부품	미래유망소재	B06012
핵심부품·센서			B07004	3차원 이미지센서
			B07006	바이오센서
			B07007	고해상도 이미지센서
			B07008	융·복합센서
			B07009	라이다(LIDAR)

\* 6차 개편 혁신성장 공동기준 매뉴얼(혁신성장정책금융센터, '25.4월) 참조하여 재구성함

## 별첨5

## 바이오 분야 해당 품목

혁신성장 공동기준 품목 중 바이오 분야에 해당하는 항목을 선별, 기준 제시

바이오			
테마명	분야명	혁신성장 공동기준 품목명	
E	바이오헬스	정밀의료(치료·진단)	E19001 재생의료
		E19002 인공장기	
		E19003 의료용임플란트	
		E19004 장내미생물치료	
		E19005 동반진단	
		E19006 액체생체검사	
		E19007 분자진단	
		E19008 유전자진단	
		E19009 의료데이터활용 임상·비임상예측	
		E19010 유전자활용치료	
		E19011 첨단의료영상진단기기	
		E19012 신경자극의료기기	
		E19013 가상현실기반의료기기	
		E19014 첨단고령친화기기	
		E19015 독립형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E19016 의료용로봇	
		E19017 안과용레이저	
		E19018 의료정보서비스	
		E19019 맞춤형디지털헬스케어	
		E19020 의료용생체적용소재	
차세대 제약·의약품	E20001 제약·바이오의약품 생산시스템		
	E20002 바이오시밀러		
	E20003 바이오신약		
	E20004 경피약물전달		
	E20005 개량신약		
	E20006 혁신신약		
	E20007 나노약물전달체		
	E20008 바이오베타		
	E20009 합성생물학(바이오파우드리)		

\* 6차 개편 혁신성장 공동기준 매뉴얼(혁신성장정책금융센터, '25.4월) 참조하여 재구성함

## 별첨6

## 유통산업 혁신 분야 AI솔루션 해당 품목

혁신성장 공동기준 품목 중 유통산업 혁신 분야 AI솔루션에 해당하는 품목을 선별, 기준 제시

유통산업 혁신 분야 AI솔루션			
테마명	분야명	혁신성장 공동기준 품목명	
F	통신·인프라	F22002   차량간통신(V2X)	
		F22003   사물인터넷(IoT)	
		F22007   RFID	
		F22008   실시간 위치추적시스템(RTLS)	
	ICT·디지털	디지털 전환	F23001   스마트물류시스템
			F23002   확장현실 및 기반·응용기술
			F23005   디지털트윈
			F23006   XaaS
			F23007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RPA)
			F23011   메타버스
	소프트웨어 응용/사이버보안	F24001   실감형콘텐츠 제작 소프트웨어	
H	AI 인프라 및 핵심모델	H27001   기계학습·딥러닝	
		H27002   지능형 상황진단 및 분석	
		H27003   멀티모달 모델	
		H27004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술(HMI)	
	데이터 분석·컴퓨팅	H28001   에지컴퓨팅	
		H28003   클라우드 컴퓨팅	
		H28004   빅데이터	
		H28005   데이터시각화	
			H28006   시맨틱기술
	AI 융합서비스	H29002   지능형교통체계	
		H29003   지능형 사회간접자본 유지관리	
		H29004   AI 분석 및 예측 솔루션	
		H29005   AI 휴머노이드	
H29006   AI 기반 콘텐츠 개발			
H29007   AI 고객경험(CX)			

\* 6차 개편 혁신성장 공동기준 매뉴얼(혁신성장정책금융센터, '25.4월) 참조하여 재구성함

유형	내용	비고	
내향형 개방	기술 구매	금전적 계약을 통해 외부의 기술을 구매	특허권 라이선싱이 대표적
	공동 연구	외부기관(주로 대학)과 공동으로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추진	보통 지적재산권의 공유를 수반
	연구 계약 (위탁 연구)	특정 요소기술 확보나 시험평가를 위해 외부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	지적재산권의 공유는 없으며, 신약 개발에서 CRO가 대표적
	장기 지원 협약	대학 등과 연구성과 사용에 관한 협약을 맺고 대규모 연구비를 일괄 지원	보통 발생하는 특허의 지분이나 우선 실시권을 기업이 얻는 조건
	합작 벤처설립	타사와 공동으로 벤처기업을 설립하고 특정기술의 사업화를 추진	합작 벤처는 제품 개발 완료 후 매각/인수를 통해 소멸되기도 함
	벤처 투자	신기술 탐색이나 우선 실시권 확보를 위해 벤처기업에 지분을 투자	다른 벤처캐피탈과 협력하거나 직접 벤처캐피탈을 설립
	기업 인수	유망 기술의 도입을 위해 기술을 보유한 기업(주로 벤처)을 인수	시스코, 피자 등 이 방식을 자주 사용하는 대표적 기업
	해결책 공모	기술적 문제를 인터넷 등을 통해 전문가들에게 공개하고 해결책을 공모	NineSigma 등 전문 사이트 활용
	사용자 혁신	사용자에게 개발 툴을 제공하거나 사용자의 피드백을 받아서 신제품 개발	의료기기, 게임, 완구 등이 대표적
외향형 개방	집단지성 활용	다수 전문가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하나의 기술에 대한 지속적 개선 추구	기술의 사적 소유권을 불인정, open source S/W가 대표적
	기술 판매	자사의 기술을 판매하여 타사의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사업화를 모색하고, 로열티 수입을 통해 수익 창출을 극대화	기업 내에 사장된 휴면 특허를 파는 경우도 있지만, 처음부터 기술판매를 목적으로 기술 개발을 하는 경우도 있음
	분사화 (Spin-off)	자사의 현재 비즈니스 모델로는 사업화가 어려운 기술에 대해 벤처기업을 설립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사업화를 추진	미활용 기술의 사업화, 사업 다각화 모색, 신성장동력 사업 창출 등이 목적

\* 출처 : 기업 내 외부요인과 개방형 혁신활동 및 개방형혁신성공에 관한 실증연구(최위 정진섭, 기업경영연구, 2015)

**별첨8****R&D 활동 적용 범위**

- R&D 활동 적용범위는 기업회계기준상 연구개발비 계상 기준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별표6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기준을 참고하여 준용

## 별첨9

## 주요 평가 기준

### □ 주요 평가 항목 및 내용

구분	평가 항목	주요 평가 내용
서류 심사	경영안정성	재무 안정성 및 수익성 등
	운용사 역량	펀드 운용 경험 및 규모, 펀드 수익률 등
	펀드 결성조건	펀드결성 가능성, 펀드규모 적정성 등
	투자전략 및 운용인력	투자전략 및 가치증대방안, 운용인력 전문성 등
	기타	운용 프로세스 및 내부시스템, 업무 협력도 등
제안 심사	운용사 안정성	운용업력 및 운용사 건전성 등
	운용인력	운용인력 역량 및 구성, 운용인력 관리방안 및 운용여력 등
	운용전략	펀드 조성목적 이해도, 투자전략, 투자 및 회수 체계 등
	기타	위험관리방안, 펀드 결성 가능성, 업무 협업 가능성 등